

정 관

제정 2004. 1. 14. (해양수산부 항만운영 107호)
개정 2008. 12. 5. (국토해양부 항만유통 756호)
개정 2013. 9. 30. (해양수산부 항만운영 2241호)
개정 2021. 4. 16. (해양수산부 항만운영 2328호)
개정 2022. 4. 6. (해양수산부 항만운영 2016호)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한국항만연수원은 항만운송사업법제27조의4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게 고용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 (이하 “항만종사자”라 한다)에 대한 항만운송·항만안전 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국제항만산업의 급격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신기법을 수집, 개발, 보급함으로써 항만산업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항만종사자의 실업을 사전에 예방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명칭) 본 법인은 한국항만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 3 조(사무소) 연수원은 주된 사무소(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지방연수원은 다음 지역에 둔다.

1. 부산광역시
2. 인천광역시

제 4 조(사업) 연수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항만종사자에 대한 각종 교육훈련 실시
2. 국내외 항만산업의 자료수집, 분석, 개발 및 보급

3. 항만종사자의 전문·기능인력 양정으로 고용안정 도모
 4.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제16조의 [별표 7]에 의한 기초교육, 양성교육, 안전교육, 연수교육, 정보교육, 특별교육 및 검수사 등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
 5. 항만산업의 신기법 개발을 위한 연구소 설치 운영
 6. 기타 연수원의 발전을 위한 필요한 사업
- 제 5 조**(운영의 기본원칙) 연수원은 특정 개인이나 단체, 기업 등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없다.

제2장 회 원

제 6 조(회원) 연수원은 다음과 같은 회원을 둔다.

1.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한 항만운송사업자·항만운송관련사업자 및 그 사업자 단체
2.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및 산하 각 지역단위노동조합
3. 항만공사법제4조제2항에 의거 설립된 항만공사

제 7 조(가입) ① 연수원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지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연수원에 제출하고 연수원이 회원가입을 승인함으로써 회원이 된다.

② 제6조 제1호의 항만운송사업 등록을 받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연수원 회원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6조 제2호의 노동조합은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에 가입함으로써 연수원 회원에 갈음할 수 있다.

④ 제6조 제3호의 항만공사는 법인설립을登記함으로써 연수원 회원에 갈음할 수 있다.

제 8 조(권리와 의무) ① 연수원의 회원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권리를 갖는다.

1. 총회에서의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
2. 연수원이 주체, 주관, 승인하는 사업에 참여할 권리

② 연수원의 회원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한 의무를 진다.

1.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와 이사회 의결사항의 이행

3. 교육훈련비 및 기타 부담금의 납부

제 9 조(자격의 상실) 연수원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자격 및 회원으로서의 일체의 권리를 상실하며, 연수원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권도 행사하지 못한다.

1.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이 취소되었거나 폐업한 때

2. 사업자 단체가 해산되었을 때

3. 노동조합이 해체되었을 때

4. 항만공사 법인이 해산되었을 때

제 3 장 임 원

제10조(임원) ① 연수원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 사 장 : 1인

2. 본 부 장 : 1인

3. 원 장 : 2인

4. 당연직이사 : 1인

5. 이 사 : 상기 5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한다.

6. 감 사 : 2인

② 제1항의 임원중 본부장·원장은 상근으로 한다.

③ 상근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 상여금, 퇴직금, 수당, 실비 등의 지급기준은 별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비상근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선출) ① 이사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다음 각 호의 추천에 의해서 선출한다.

1. 본부장·원장 :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다.

2. 이사(비상근임원) : 한국항만물류협회,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부산·인천·울산항만 공사

③ 당연직이사는 해양수산부 주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다음 각 호의 추천에 의하여 선출한다.

1. 한국항만물류협회에서 추천한 자 : 1인

2.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에서 추천한 자 : 1인

⑤ 이사와 감사는 겸임할 수 없다.

⑥ 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임원의 선출방법에 의하여 후임자를 선출하되, 임원의 사임사유가 그 소속회사의 사내 인사이동으로 인한 때에는 그 후임자가 이를 승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총회에서 선출된 것으로 본다.

⑦ 임원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의 2(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상근임원을 추천하기 위해 연수원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원추천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연수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을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상근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필요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 1년 단위로 추가 선임이 가능하고 그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 4. 6>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은 임기만료가 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취임하기 전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4조(임원의 성실의무) 연수원의 임원은 법령 및 법령에 의하여 발하는 관계

관청의 명령과 정관, 총회 및 이사회 의결을 준수하고 연수원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5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연수원을 대표하고, 연수원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이사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본부장·원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연수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6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연수원의 재산 상황 및 업무를 감사하는 일
2.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을 때는 이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3. 제2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4. 연수원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5. 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 4 장 총 회

제17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법인의 해산·합병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5. 사업실적 및 계획의 승인
6. 예산 및 결산의 승인
7. 감사결과의 승인
8. 재산의 매도, 증여, 담보 등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사항

제18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2회로 3월과 11월중에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소집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이사회 의결이 있을 때
3. 재적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4. 제1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④ 이사장은 한국향만물류협회와 전국향운노동조합연맹 대표자가 협의한 회의안건을 총회개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때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제19조(총회소집의 특례) 총회의 소집권자가 궐위 되었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10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해진 때에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때 의장은 총회에서 따로 선출한다.

제20조(총회의 성립과 의결)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최한다.

② 총회에서는 제18조(총회의 소집) 제4항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총회의 의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1조(총회의결 제척사유) 다음 각 호의 1의 해당하는 회원은 그 사항에 대한 총회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회원 자신에 관한 사항
2. 회원과 법인 간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2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록은 의장,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서명 날인한 후 이를 보존한다.

② 총회의 의사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 회원수
3. 의사의 요강, 의결사항 및 그 찬·부수

제 5 장 대의원회

제23조(대의원) ① 연수원은 회원의 의사를 대표하는 대의원을 둔다.

② 연수원의 대의원 정수는 20인 이상 30인 이하로 하되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증감할 수 있다.

제24조(대의원의 선출) 연수원의 대의원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중에서, 사용자측은 한국항만물류협회, 노조측은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에서 노사 동수로 선출한다.

제25조(대의원의 임기) ① 연수원의 대의원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대의원이 그 소속회사의 사내 인사이동으로 사임한 때에는 그 후임자가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26조(대의원회의 구성) 대의원회는 이사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27조(대의원회의 기능) 대의원회는 제17조(총회의 기능)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총회를 갈음할 수 있다.

제28조(대의원회의 회기 및 소집) ① 대의원회는 정기대의원회와 임시대의원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대의원회는 매년 2회로 3월과 11월중에 개최한다.

③ 임시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소집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의원회 소집을 의결한 때

3. 재적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④ 이사장은 한국항만물류협회와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대표자가 협의한 회의안건을 대의원회 개최 7일 전까지 대의원 전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제29조(대의원회의 성립과 의결) ① 대의원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② 대의원회에서는 제28조 제4항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대의원회 의사는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30조(대의원회의 의사록) ① 대의원회의 의사록은 이사장, 출석한 대의원중 연장자가 서명날인한 후 이를 보존한다.

② 대의원회의 의사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 대의원수

3. 의사의 요강, 의결사항 및 그 찬·부수

제 6 장 이 사 회

제31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이사로 구성한다.

제32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거나 심의·의결한다.

1.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의 이행
2.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5.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의 소집 및 부의할 안건의 예비조정
7.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8. 기타 중요사항

제33조(이사회의 회기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2회로 3월과 11월중에 개최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 제16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④ 이사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한 통지서를 이사회 개최 7일 전까지 이사회 구성원 전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때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⑤ 이사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제34조(이사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 된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이사회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10일 이내에 이사회 소집

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이사회는 최고 선임이사가 소집하고, 그 임시의장이 된다.

제35조(이사회 의 성립과 의결)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② 이사회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36조(이사회 의 의사록) ① 이사회 의 의사록은 의장, 출석한 이사가 서명 날인 한 후 이를 보존한다.

② 이사회 의 의사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 이사수
3. 의사의 요강, 의결사항 및 그 찬·부수

제37조(의결 권의 대리 등) ①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는 구성원이 그 소속회사의 임·직원에게 회의참석 및 임원피선 등 대리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대리인 또는 위임을 받은 회원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장 재 산 및 회 계

제38조(기본 재산) 연수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기본재산으로 한다.

1.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비
(이하 “교육훈련비”라 한다.)
2. 정부보조금 및 회원의 출연금
3. 다른 단체 및 기관의 위탁교육에 의한 교육훈련비
4. 국내외 공공기관, 민간단체 및 개인의 출연금
5.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 목적의 지정기부금 <신설>

2021. 4.16.>

6. 교육훈련비의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7. 기타 수익사업 등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39조(교육훈련비의 납입) 제3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비는 별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자가 연수원에 납입한다.

제40조(재산의 관리) 재산의 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재산에 대한 매도·임대·교환 등 처분
2. 재산의 담보제공등 의무의 부담 또는 기채
3. 재산에 대한 권리포기

제41조(세입) 연수원의 세입은 교육훈련비, 사업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42조(회계연도) 연수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3조(사업계획 및 예산안) 연수원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은 이사회회의 의결 및 총회의 승인을 받아 매년 11월 3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자금의 차입) 이사장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자금 또는 물자를 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회의 의결 및 총회의 승인을 받아 임시 차입할 수 있다.

제45조(수익사업의 운영) ① 연수원은 목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연수원이 수익사업을 운영하여 취득한 수익금은 목적사업을 위하여 지출하거나 법인재산에 편입시켜야 하며, 임·직원에게 분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연수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사업의 회계와 목적사업의 회계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6조(결산보고 등)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회의 의결 및 총회의 승인을 받아 다음년도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잔액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 8 장 조 직

제48조(직제 등) ① 연수원 제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직제, 직원의 정원, 임명, 승진,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연수원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 9 장 보 칙

제49조(법인의 해산·합병) 연수원을 해산하고자 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0조(해산법인의 잔여재산 귀속) 연수원을 해산할 때는 잔여재산을 총회의 의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수원과 목적이 유사한 비영리법인에게 증여하여야 하며 회원에게 분배할 수 없다.

제51조(정관의 변경) 연수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52조(민법 등의 준용)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해양수산부장관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령)”을 준용한다.

제53조(운영세칙) 연수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54조(경영공시) ① 연수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정관
2. 결산서 및 재무제표

3. 연도별 경영목표, 예산 및 운영계획
 4. 경영실적평가보고서
 5.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신설 2021. 4.16.>
 6. 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요청한 사항
- ② 연수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비치하고 연수원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16.>

부 칙

-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한 날(2004. 1. 14.)로 부터 시행한다.
- 제 2 조**(법인체 해산 및 권리의무의 승계) 종전의 민법에 의한 한국항만연수원은 이 정관에 의한 한국항만연수원이 성립하는 때에 해산하고, 그 업무, 사업, 직원, 재산, 부채 등의 모든 권리·의무를 항만운송사업법제2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항만연수원이 이를 승계한다.
- 제 3 조**(임원 및 대의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10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 및 대의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항만연수원이 승계하며, 임기는 기존의 선임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부 칙

-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승인한 날(2008. 12. 5.)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한 날(2013. 9. 30.)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한 날(2021. 4. 16.)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한 날(2022. 4. 6.)로부터 시행한다.